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FAX 회신처

차량정보

차량번호	
차량명	(년식)
피보험(소유)자명	
연락처	

운전자사항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피보험(소유)자와의 관계	
면허번호		면허종별	
적성검사만료	년 월 일	일까지 사고당시 (정상,정지중,취소)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경	사고약도
사고장소			
진행방향	에서 (으)로 진행중		
사고경위			
본인차량 파손부위	(견인: 유, 무)		
상대차량 파손부위	(견인: 유, 무)		
도로형태	직선도로, 골목길, 사거리, 삼거리, 기타	경찰서	신고(경찰서),미신고
본인주행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차로, 차선없음	탑승 인원	자차 유 (운전자 외 명), 무
타차주행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차로, 차선없음		타차 유 (운전자 외 명), 무
중대사고여부	음주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사고후도주, 횡단보도, 속도위반(Km/h), 앞지르기위반, 철길건널목, 보도침범, 개문발차		
피해사항	피해자 성명: 외 명	치료병원	(Tel:)
	피해물 차량번호: 외 대	수리공장	(Tel:)
	차량의 피 해 물: 외 건	복구업체	(Tel:)

상기 사고에 대하여(대인, II,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차상해) 및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오니 지급바랍니다. 또한 청구자 본인은 상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험금 청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음주·무면허운전, 차량·운전자 바뀌지기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상기 사고 건의 피해자(외 명)에 대한 합의 및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권한 일체를 귀사에 위임하며, [치료비, 대물원상복구비, 자차 수리비]의 보험금 청구권과 영수권을 [치료병원, 수리업체]에 위임합니다.

청구 및 위임 일자	청구 및 위임자의 성명
청구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⑨항 1~3호)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제185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고접수시 발송된 사고처리과정 안내장을 확인해주세요.

본인은 손해사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위 내용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인)